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33
----------	-------

발의연월일 : 2025. 7. 11.

발 의 자 : 김문수·김남근·박지원
강준현·허성무·이수진
김준혁·민형배·이강일
이광희·양부남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규학습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할 수 있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유치원에서의 방과후 과정은 「유아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초·중·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학교나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놀봄학교는 관련 정책이 법률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바,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초·중등학교에서 방과 후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과후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23조의3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방과후과정) ① 학교의 장은 정규학습시간 전후 또는 휴업 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방과후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방과후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과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방과후과정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3조의3(방과후과정) ① 학교의 장은 정규학습시간 전후 또는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방과후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u> <u>② 교육부장관은 방과후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u> <u>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과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u>

	<u>하여 방과후과정에 관한 수요</u> <u>조사를 할 수 있다.</u>
--	--